## 2025년도 「규제혁신 로봇 실증사업」 지원 과제 모집 공고

서비스로봇 모델별 규제 해결 솔루션을 마련하여 규제 개선 및 시장 활성화를 위한 「규제혁신 로봇 실증사업」지원과제를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참여를 희망하는 기관 및 기업 등은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25년 2월 27일 한국로봇산업진흥원장

### 1. 사업개요

- □ (사업명) 규제혁신 로봇 실증사업(규제발굴형, 제품검증형, 데이터확보형)
- □ (수행기간) 협약일 ~ '25. 12. 31.(협약기간 약 8개월)
  - \* 연내('25) 종료 후 3년 성과활용기간 진행
- □ (지원규모) 국비 <u>총 13억원</u> 내외 규모
- □ (과제구분) 규제 현황 및 정비 방향을 기준으로 3-Track 분리
  - o 기업별로 상이한 규제 상황에 따라 규제 요소 해결에 직결되는 트랙을 선택 지원(택1)
    - \* 규제 연관 과제 예시 가이드라인 참고 (공고문 6p)

● 규제발굴형	② 제품검증형	❸ 데이터확보형	
사업 모델에 따른 규제요소	규제 해소를 위한 제품	규제 해결을 위한 실증 및	
발굴 및 개선 로드맵 수립	개조·개량 및 검증	관련 데이터 확보	
BM의 규제 유무가 불분명하여	법·제도 등 관련 기준·조건에	규제 개선을 위해 실증을 통한	
사전파악 및 정비 방향 등 규제	적합하지 않아 시장 출시를 위해	임상, 안전성, 효과성 등	
해결형 사업계획서 설계 필요한 모델	제품 개조·개량이 필요한 모델	근거 자료 도출이 필요한 모델	
예) 휴머노이드 로봇 등 신기술 BM	예) 실외이동로봇의 도시공원 출입 규정 혹은 운행안전인증제도 기준 미충족 모델	예) 공적급여·지원품목 대상 추가, 로봇 활용 수가화 추진 등	

#### 2. 지원 규모 및 내용

### (1) 공통사항

- □ (지원과제 및 규모) 총 13억원 내외 규모 지원 예정
  - <u>발굴</u> 5개 내외 과제, 검증 + 확보 5개 내외 과제
    - \* 정부예산(안), 접수된 총 과제 수와 유형별 지원 규모, 긴급한 내·외부 정책 변화 등에 따라 최종 지원과제 수 및 지원 규모는 조정될 수 있음
- □ (지원대상) 규제 존치, 안전기준 미비, 검증 데이터 부재 등 규제 애로사항으로 시장 진출·확산이 제한된 서비스로봇 맞춤형 솔루션을 희망하는 로봇공급기업(주관기관)
  - ㅇ (컨소시엄) 사업유형별 컨소시엄 구성 및 사업비 매칭 조건 상이

구분		❶ 규제발굴형	❷ 제품검증형	❸ 데이터확보형
커스니어	주관기관	필수	필수	필수
컨소시엄	참여기관	(선택)	(선택)	필수
사언비	국비	최대 100%	최대 50%	최대 50%
사업미	민간부담금	(선택)	최소 50%	최소 50%

- 로봇공급기업 단독 컨소시엄 또는 참여기관(수요처·연구기관 등)을 포함한 복합컨소시엄(주관: 로봇공급기업, 참여:수요처 등)

#### < 컨소시엄 구성 가이드 >

구분	역할	자격요건	주요 역할	구성
주관기관	공급 기업	로봇 개조·개량 및 실증활용모델 기획이 가능한 로봇/SI 기업	주관기관으로서 보유 제품 관련 규제 현황과 정비 방향에 대한 이해도가 있어 과제 추진 및 관리 등 총괄 운영이 가능한 기업	공통
참여기관	수요처	서비스 로봇 실증 및 도입이 가능한 수요처	서비스로봇 제품 및 서비스 활용 등 과제 운영 지원	<b>발굴</b> 검증 선택
	기타	기타 기업, 연구기관, 대학 등	과제 계획 수립 및 실증 전반 필요 연구 등 활용 지원	<mark>확보</mark> 필수

- \* 기관 조건 : 법인 기업·기관을 대상으로 하며, 개인사업자는 사업 취지를 고려하여 제외
- \* 타 기업, 연구기관, 대학 등은 세부 주관기관으로 컨소시엄 구성 가능
- \* 스타트업 기업의 경우 접수 마감일까지 설립이 완료된 경우 지원 가능 (창업 예정 기업 불가)

## (2) 규제발굴형

- □ (사업목적) 비즈니스모델 확립 및 시장 진입을 위해 규제이슈, 정비 방향 명확화가 필요한 제품의 규제 사항 발굴 및 로드맵 수립 지원
- □ (공모분야) 서비스로봇 제품 및 BM을 보유한 기업이 배달, 건설, 제조, 의료, 돌봄, 환경, 기타 등 분야 자유롭게 제안
  - ㅇ 규제 관련 당위성 등 사업 목적부합성이 높은 과제 우선 선정
    - \* 旣개선 완료 시나리오로서 규제사항이 명확하여 규제 사전파악 및 정비 방향 설계 필요성이 낮은 경우 선정 제외
- □ (과업내용) BM 확립 및 시장 진출을 위한 상세 실증·보급 계획

[로봇 제품 BM 구체화 ]	[ 로봇 보급실증 시 규제사항 확인 ]	[BM별 규제 요소 발굴]
성능 스펙, 운용 시나리오, 실증환경요건, 검증 계획 등	법무법인 컨설팅 및 담당부처 의견 심층 검토 등	해결 유형 설정 및 유형별 해결방안 기획
* 기술, 표준, 사업화 컨설팅 병행	* 필요시 규제샌드박스 신속확인 병행	* 해결유형 : 규제 회피, 완화, 해소 등

비즈니스모델에 따른 규제요소 발굴 및 개선 로드맵 수립 등 규제해결형 사업계획서 도출 (모델별 규제현황, 관련법령, 정비방향, 기대효과 등 작성)

- □ (지원규모) 과제당 최대 <u>0.6억원</u> (국비 100%)
  - (지원내용) 서비스로봇 실증 시나리오 및 안전대책 기획, 로봇 스펙·표준·규제 자문 컨설팅 등 사전 규제 발굴 및 실증 시나리오 구체화 등이 포함된 "세부 사업 계획 수립" 비용 지원

구분	국비	민간부담금	민간부담금 구성 조건	
규제	규제 100%		• 주관기관(로봇기업/SI기업)	선택
발굴형	(최대 0.6억원)	-	• 참여기관(수요처/기업/기관/대학 등)	선택

- □ (지원조건) 규제 시나리오 구축 필요성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 과제 종료 시점까지 과업 수행 완료가 가능한 컨소시엄(단독 혹은 복합)
  - 동일한 내용으로 '25년 서비스로봇 실증사업 동시 지원 불가. 단, 서비스의 내용(수요처, 시나리오 차별성) 및 규제 개선 등 필요성이 있는 경우 중복 지원 가능
- □ (가점사항) 발표평가 시 해당 과제에 가점 부여(2점)
  - (스타트업) 로봇공급기업이 창업 7년 이내 및 최근 연도 매출액20억 미만 등(양식9 확인 必)
    - \* 가점 사항별 증빙 자료 제출 및 서류평가에서 적합 시 인정

### (3) 제품검증형

- □ (사업목적) 제품의 개조·개량 및 안전성·효과성 검증을 통한 규제 해결 및 시장 진출 도모
- □ (공모분야) 서비스로봇 제품 및 BM을 보유한 기업이 배달, 건설, 제조, 의료, 돌봄, 환경, 기타 등 분야 자유롭게 제안
  - ㅇ 규제 관련 당위성 등 사업 목적부합성이 높은 과제 우선 선정
    - \* 旣개선 완료 혹은 법령 기준 충족으로 즉시 로봇 도입 및 실증이 가능하여 제품 개조·개량 및 안전성·효과성 검증 등 규제 해결 필요성이 낮은 경우 선정 제외
- □ (과업내용) 旣설립된 기준·조건 맞춤형 개조·개량 및 검증

[ 규제 개선 방향 확립 ]	[ 맞춤형 제품 개조개량 ]	[ 안전성 및 효과성 검증 ]
법령 기준·요건 미충족 사유 및 개조·개량 명확화	기준 충족을 위한 기존 제품 개조·개량 * 필요시 시제품 제작	개조·개량 제품의 규제 요소 적합 여부 검증 * 필요시 검증데이터 도출을 위한 실증

법령, 조례, 제도, 가이드라인 內 기준 충족을 통한 규제 해결

- □ (지원규모) 과제당 최대 <u>2.5억원</u> (국비 50%)
  - (지원내용) 과제 추진에 필요한 "개조·개량 및 시제품 제작 비용" 및 이를 검증하기 위한 "시험평가 비용" 등 지원

구분	국비	민간부담금	민간부담금 구성 조건	
 제품	제품 50%	F00/	• 주관기관(로봇기업/SI기업)	필수
검증형	(최대 2.5억원)	50%	• 참여기관(수요처/기업/기관/대학 등)	선택

\* 컨소시엄 내 민간부담금 부담 비율은 자유

□ (지원조건) 규제 해결 필요성이 높아 과제종료 시점까지 과업 수행 완료가 가능하고, 과제 착수 시 민간부담금 매칭(전체 사업비의 50% 이상)이 가능한 컨소시엄(단독 혹은 복합)

### (4) 데이터확보형

- □ (사업목적) 규제 개선을 위해 실증데이터가 필요한 모델의 실증을지원하여 서비스로봇 산업 활성화, 시장 보급 촉진에 기여
- □ (공모분야) 서비스로봇 제품 및 BM을 보유한 기업이 배달, 건설, 제조, 의료, 돌봄, 환경, 기타 등 분야 자유롭게 제안
  - ㅇ 규제 관련 당위성 등 사업 목적부합성이 높은 과제 우선 선정
    - \* 규제가 개선되어 데이터 확보의 필요성이 낮거나, 실증특례가 필요한 경우 승인서 미제출 등 준비가 미흡하여 사업 기간 내 실증을 할 수 없는 경우 선정 제외
- □ (과업내용) 로봇 실증데이터 확보 및 활용 방안 설계

[ 로봇 도입 및 실증 ]	[ 실증데이터 확보 ]	[ 실증데이터 활용계획 수립 ]
수요처 내 로봇 도입을 위한 인프라 구축 및 실증 추진 * 필요시 제품 개조·개량	규제 해결형(해소·개선) 실증데이터 도출	실증 결과 분석 및 향후 활용 계획 작성

수요처 내 로봇 도입 및 실증을 통해 규제 개선을 위한 근거 자료 마련 (임상, 안전성 검증, 효과성 검증 등 제·개정 시 활용 가능 데이터)

- □ (지원규모) 과제당 최대 <u>2.5억원</u> (국비 50%)
  - (지원내용) 수요처의 로봇 도입 및 실증에 필요한 "개조·개량 비용, 인프라 구축" 및 사업 운영 관련 제반 비용 등

구분	국비	민간부담금	민간부담금 구성 조건	
데이터	50%	E00/	• 주관기관(로봇기업/SI기업)	피스
확보형	(최대 2.5억원)	50%	• 참여기관(수요처/기업/기관/대학 등)	2丁

- \* 컨소시엄 내 민간부담금 부담 비율은 자유
- □ (지원조건) 주관기관(로봇공급기업) 및 참여기관(수요처 등) 컨소시엄구성이 가능하고, 과제 착수 시 민간부담금 매칭이 가능한 컨소시엄

### ※ 규제 관련 과제 리스트 예시

- ✓ 아래 리스트는 ①'첨단로봇 규제혁신 방안'("23.3.), ②'로봇산업 규제혁신 과제발굴을 위한 민관협의체 운영", ③규제혁신 로봇 실증사업 완료 BM 등에서 발굴한 규제 관련 과제 일부이며, 예시로 제시된 과제 외 기업별 직면한 규제 애로사항에 따라 자유롭게 제안 가능
- ✓ 단, 사업계획서 내 목적 부합성, 해당 유형 적합성, 규제 개선 필요성과 시급성 등 사업 추진의 목적과 기대효과를 규제 측면에서 구체적 작성 必

NO	도입로봇	분야	규제 연관 과제명
1		비소	▷ 실외 이동로봇의 옥외광고 허용
2	실외이동로봇	배송	▷ 실외이동로봇의 도심지 대기공간 마련을 위한 기준 마련
3	걸되어중도大	순찰	▷ 실외 이동로봇 도시공원 출입 관련 규정 완화
4		건설	▷ 자율주행 로봇의 도로공사 등을 위한 기준 마련
5		공통	▷ 공공분야 로봇 활용 촉진을 위한 보안 관련 제도 정비
6			▷ 공동주택 내 주차로봇 도입 허용
7		주차	▷ 기계식 주차장치 입출고 시간 기준 완화
8		十个	▷ 지능형 주차장치 활용 시 관리인 의무규정 완화
9	자율주행로봇		▷ 지능형 주차장치 활용 시 주차장 구획기준 조정
10	시절구성도大	므ㄹ	▷ 자율주행로봇의 건설현장 엘리베이터 탑승 허용
11		물류	▷ 고중량 이동 로봇의 승강기 탑승 표준 개정
12		배송	▷ E/V 탑승 자율주행로봇 연동시스템 표준 기준 정립
13	순찰	순찰	▷ 순찰로봇의 경찰장비 도입 조기 추진
14		안전	▷ 자율주행 로봇의 항공기 계류장 진입 기준 마련

15			▷ 로봇활용 푸드버스 도입을 위한 규정 마련
16	# C 그 H	푸드	▷ 조리용 협동로봇 그리퍼 관련 규정 신설
17	협동로봇		▷ 외식업 매장 내 로봇활용을 위한 기준 마련
18		제조	▷ 협동로봇을 활용한 맞춤형 화장품 조제 허용
19		재활	▷ 재활로봇을 활용한 의료행위에 대한 별도 수가화 추진
20	의료로봇	ЕН	▷ 복지부 보조기기 품목 내 공적급여 대상 추가
21		돌봄	▷ 의료서비스 취약 지역에 대한 비대면 재활 허용
22	에시기보구보	의료	▷ 의료용 수술로봇의 모의시연 기간 기준 완화
23	웨어러블로봇	공통	▷ 웨어러블 로봇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적용요율 확대
24			▷ 로봇을 활용한 건축물 원격점검 기술·보급 및 제도 개선
25	건축로봇	건설	▷ 건설로봇의 기계설비공사업등록 및 면허 요건 완화
26			▷ 이동식 건설로봇의 안전검사 가이드라인 마련
27	처ㅅㅋㅂ		▷ 선박 기름탱크 청소 작업에 로봇 활용 허용
28	청소로봇	청소로봇 수중	▷ 선박 표면 청소 작업에 로봇 활용 가능 기준 마련
29	안전로봇	소방	▷ 소화설비 인정 범위 내 재난안전로봇 허용
30	휴머노이드로봇	안내	▷ 테마파크 등 공공시설 내 휴머노이드형 서비스 안내 로봇 BM 개발

### 3. 신청자격 및 선정제외 (공통)

#### □ 신청자격

- 각 유형별 협약기간 종료 시까지 규제 발굴, 로봇 검증 및 실증
   등 사업 목표 달성이 가능한 제품 및 서비스에 한해 신청 가능
- 국비는 재정 조기 집행을 위해 과제 협약 후 지급하되, 선정 후 "이행보증보험" 제출 필수 (협약 전까지 미제출시 선정 취소)
  - \* 지방비의 경우에도 사업비 집행기관별 발급 원칙. (보증금액 : 집행기관별 국비 전체 금액 / 보험기간 : 협약일~사업 종료일+2개월)

### □ 선정제외

- ㅇ 신청 내용이 과제 목적, 특성, 공고내용 등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 ㅇ 동일한 내용으로 중앙정부 또는 지자체의 사업을 수행 중인 경우
- 민간부담금(현금) 매칭이 불가능한 컨소시엄 점증 확보
  - \* 전체 사업비 10% 이내 현물 매칭 가능(단, 인건비 한정이며 다른 세목은 현금 필수)

- 실증 가능한 제품이 없어 연구개발 성격인 과제이나, 공고일 현재 유사한 내용으로 R&D 과제<sup>\*</sup>를 기추진하고 있는 경우
  - \* R&D 과제 종료일이 본 사업 착수 전일 경우 및 R&D 과제 및 실증 사업 간 중복성 여부의 경우 평가위원회 시 지원 여부 결정 예정
- 주관기관, 참여기관, 각 기관의 장, 총괄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의무사항을 불이행하여 국가정부출연금 사업 또는 진흥원 사업 참여 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
  - \* 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기술료 납부계획서 제출, 회수금 또는 환수금 납부 등
- ㅇ 사업계획서 및 제출 서류가 미비하거나 거짓으로 작성된 경우
- 0 사전지원제외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구분	사전 지원제외 기준
검토 기준	1. 기업의 부도
	2.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단,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
	3.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 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단,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
	4. 파산·회생절차, 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5. 사업개시일 이후 3년 이상 경과하였고, 최근 2년 결산 재무제표상 부채비율이 연속 500% 이상인 기업 또는 유동비율이 연속 50% 이하인 기업 (※ 상기 부채비율 계산 시, 벤처캐피탈협회 회원사로부터의 대출형 투자유치(CB, BW)를 통한 신규차입금은 부채총액에서 제외 가능)
	6. 최근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
	7.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결산감사 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
조치	○ 수행기관, 수행기관의 장, 총괄책임자의 경우 "사전 지원제외 대상"으로 처리

- ※ 선정제외 사유 해당 여부는 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판단하며, 선정 이후라도 해당 사실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선정이 취소될 수 있음
- ※ 기타 세부 내용은 「지능형 로봇 보급 및 확산사업 관리지침」 참고(2024.5.13.)

### 4. 선정절차 및 방법

□ 과제 선정 절차

			1. E		선정	성평가			
사업	V	공모	1	1단계 2단계 3단계		1	과제		
공고	1	접수	1	<b>서류심사</b> (서면)	<b>현장심사</b> (필요시)	발표평가 및 사업비 심의	최종 평가 사업비 확정	A	선정
2/27~3/28		3/24~3/28		4월 1주	4월 2~3주		4월 4주		4월 5주차
KIRIA		KIRIA		평가위원회				KIRIA	

#### □ 과제 선정 방법

- (평가 주체) 1단계 접수 과제 필수 제출서류 및 재무심사 등 사전 검토를 실시하고, 2단계 서류 및 발표평가는 선정평가위원회\* 구성
  - \* 학회·공공기관 등 추천을 받아 로봇·표준, 규제 및 수요분야 산·학·연 전문가 5명 내외로 구성(비공개)
- (1차: 서류심사) 필수 서류의 적격성 여부, 회계사의 재무심사 등을
   통한 사전지원제외 여부, 신청 자격 등 적부 심사

	구분	주요내용					
제결	출서류 검토	▶ 사업계획서 등 지원 서류의 적정성, 사전지원제외 여부					
	공고내용과의 부합성	▶ 해당 사업 목적에 부합하는지 여부					
신청자격 검토	의무사항 불이행 여부	▶ 주관기관, 참여기관, 총괄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의무사항(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기술료 납부계획서 제출, 정산금 또는 환수금 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는 때					
	참여제한 여부	▶ 주관기관, 참여기관, 주관기관의 장, 참여기관의 장, 총괄 책임자가 접수 마감일 현재 국가정부출연금 사업 또는 진흥원 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때					

\* 근거: 제출서류 및 신청자격 검토, 사전지원제외 대상 및 처리기준 (규제혁신 로봇 실증사업 안내서, 지능형로봇 보급 및 확산사업 관리지침)

- (2차: 현장심사) 로봇 기업의 제품·시설·공장 및 실제 로봇 활용 현장인 수요처 환경 확인 등 제품 적정성과 수행 능력 심사
- 간사 서류 검토 이후 필요시 수행하며(생략 가능), 발표평가 검토 자료로 활용 예정(별도 탈락 과제 없음)
- o (3차: 발표평가 및 사업비 심의) 외부전문가 평가위원회 중심으로 과제별 사업내용 대면평가 및 사업비 심의
- (평가위원회) 평가의 전문성·공정성·객관성 확보를 위해 로봇전문가, 공공정책, 사업화 등 외부 전문가 5인 이내로 평가위원회 구성

구분	주요내용
	▶ 과제 총괄책임자 발표(사업계획, 사업비, 제품, 수행능력 및 파급효과 등)를
	통해 지원우선순위 및 사업비 지원금액 심의
	* 과제 총괄책임자 발표 및 질의응답 실시, 참여기관별 관계자 1인 참석 필수
	** 평가점수는 최고·최저점수를 제외하고 산술평균 계산하며, 70점 미만인 경우나
발표평가 및	추가 결격 사유가 발생할 경우 지원 제외
사업비 심의	▶ 평가위원회는 발표평가에 따라 지원우선순위 및 사업비 지원금액 산정
	▶ 지원우선순위 및 심의 결과(사업비 규모 등)를 주관기관에 통보하고,
	발표평가 통과 컨소시엄의 재검토요청서 접수
	* 재검토요청서 : 심의 결과(사업비 규모, 로봇 가격 등)에 따른 재검토 요청을
	접수하며, 지원 우선순위에 대한 재검토 요청은 받지 않음

- 유형별 발표평가 기준 및 평가 지표

	규제발굴형	
구분	평가지표	배점
목적 부합성	∘규제 발굴의 필요성과 시급성, 선정의 당위성	20
(35)	∘규제 개선 로드맵 수립의 필요성	15
	∘사업 목표 및 추진 체계의 타당성과 명확성	10
추진계획의 적정성 (35)	∘ 규제 개선 계획의 적절성·구체성 - 전문가 풀 구성(안) 및 자문 계획, 안전성 및 효과성 검증, 수요환경 분석 등	15
	·사업비 구성 및 가격산출의 적정성	10
사업성 및 파급효과	∘로봇제품 및 관련 서비스의 혁신성 및 우수성	5
(10)	∘경제적 파급효과 및 사회적 가치창출 효과 (상품화·비즈니스 모델 등)	5
수행능력	∘ 수행기관의 역량 (규제 이해도, 인프라, 인력, 기술 등)	10
(20)	∘ 필요 자원 및 역량 확보 계획의 구체성	10
가점	·로봇기업이 스타트업에 해당하는 경우	2
	합 계	102

	제품검증형	
구분	평가지표	배점
목적 부합성	∘ 규제 해결의 필요성	20
(35)	∘규제 해결을 위한 개조·개량 필요성과 시급성, 선정의 당위성	15
	∘사업 목표 및 추진 체계의 타당성과 명확성	10
추진계획의 적정성	·사업 추진 계획의 적절성·구체성	15
(35)	- 개조·개량 혹은 시제품 제작, 안전성 및 효과성 검증, 전문가 자문 계획 등	.5
	·사업비 구성 및 로봇 가격 산출의 적정성	10
사업성 및 파급효과	∘로봇제품 및 관련 서비스의 혁신성 및 우수성	5
(10)	∘ 경제적 파급효과 및 사회적 가치창출 효과 - 상품화·비즈니스 모델 등	5
수행능력	∘주관 및 참여기관의 역량 (규제 현황 이해도, 인력, 기술 등)	10
(20)	∘필요 자원 및 역량 확보 계획의 구체성	10
	합 계	100

	데이터확보형	
구분	평가지표	배점
목적 부합성	∘ 규제 해결의 필요성	20
(35)	∘규제 해결을 위한 실증 및 데이터 활용의 필요성	15
	∘사업 목표 및 추진 체계의 타당성과 명확성	10
추진계획의 적정성	· 사업 추진 계획의 적절성·구체성	15
(35)	- 개조·개량, 실증 환경 구축, 데이터 활용 계획 등	13
	·사업비 구성 및 로봇 가격 산출의 적정성	10
사업성 및 파급효과	∘로봇제품 및 관련 서비스의 혁신성 및 우수성	5
(10)	∘ 경제적 파급효과 및 사회적 가치창출 효과 - 상품화·비즈니스 모델 등	5
수행능력	∘주관 및 참여기관의 역량 (규제 현황 이해도, 인력, 기술 등)	10
(20)	∘필요 자원 및 역량 확보 계획의 구체성	10
	합 계	100

- \* 평가 세부 항목은 변경될 수 있음
- (4차: 최종평가 및 사업비 확정) 3단계 발표평가 참석위원 중심으로
   외부전문가를 선발하여 최종 평가위원회 구성
- (평가방법) 3단계 평가결과 및 재검토요청서를 토대로 서면평가를 실시하여 지원대상과제 및 후보과제를 선정하고, 지원사업비 확정
  - \* 최종 평가결과를 수용하지 못하는 경우 사업 포기로 간주하며, 차순위 컨소시엄과 협약 진행

- ㅇ (협약체결) 진흥원과 컨소시엄(주관, 참여기관) 간 전자협약 체결
  - \* 사업관리시스템(www.kiria.org/pms)을 활용하여 협약 진행 예정 (범용 공인인증서 필요)
- ㅇ (국비지급) 국비지원금은 필요 서류\*를 진흥원에 제출 시 지급
- 선정된 컨소시엄은 <u>진흥원이 지정하는 시스템 사용, 신설 계좌를</u> 개설하여 사업비를 관리하여야 함
- \* 서류(사업비집행 기관별): 이행보증보험. 지정 은행 사업비 신설계좌 등
- ✓ 국비는 민간부담금 입금 완료 후 전액 지급. **협약 후 1개월 이내 민간부담금 입금**이 완료되어야 하며, 지방비의 경우 지방비 매칭확약서에 의거하여 국비 선지급 가능.(단, 사업 종료 2개월 전까지 확약일 설정 및 입금 필수)
- ✓ 총사업비(국비 및 민간부담금)는 사업비를 사용하는 기관 명의의 독립 계좌로 관리·운영되어야 함 (기존 계좌, 타 사업비와 혼용된 계좌 사용 불가)
- ✓ 사업비를 사용(소요)하는 기관은 반드시 계좌개설, 시스템을 사용해야 함. 필수사항으로 **지자체의 경우 반드시** 가능 여부 확인하여 지원 필요

### 5. 신청기간 및 방법

□ (공고기간) '25. 2. 27.(목) ~ '25. 3. 28.(금), 14:00까?		(공고기간)	<b>′</b> 25.	2.	27.(목)	~	<sup>25</sup> .	3.	28.(금),	14:00까	지
---	--	--------	--------------	----	--------	---	-----------------	----	---------	--------	---

(접수기간)	125	3	24 (월)	~	<sup>'</sup> 25	3	28 (글).	14·00 <i>7</i> ]	-ス
1 1 / / 172/	ZU.	J.	<i>스</i> 포.( 근 /		∠∪.	J.	<del>-</del> 20.1 <del>-</del> 1,	11.00°	1 1

□ (접수방법) <u>사업관리시스템(PMS)을 통해</u> 사업계획서 등 관련 양식 작성본 및 제출서류 일체 **온라인 접수** 

사업관리	홈페이지 주소	www.kiria.org/pms
시스템	공고번호	KIRIA-PMS-2025-007호

#### ○ 과제신청은 PMS를 통한 온라인 접수만 가능(오프라인으로 서류 제출 불가)

- ※ 온라인 과제신청 및 입력 안내는 사업관리시스템 홈페이지(www.kiria.org/pms) '공지사항' 내 매뉴얼 참고
- 주의사항
- 사업관리시스템(www.kiria.org/pms) '과제신청'을 통해 온라인 접수서류제출 후 접수증 확인 필수
- **②** 접수 마감일에는 접속 과부하로 인한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과제접수 요망
- ❸ 온라인접수 마감시간까지 접수완료 및 서류제출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접수 불가
- ◆ 시스템 오류로 이메일 제출 시 오류 증빙(화면캡처)과 제출 서류 일체 압축하여 제출- [메일제목] 2025년 규제혁신 로봇 실증사업(유형)\_주관기관명\_참여기관명
- **6** 사본 서류의 경우 원본대조필 날인 필수

## □ (제출서류) 사업계획(신청)서 및 제출 서류 <sup>1)</sup>

78	ᅰᄎᄔᄅ		제출	ul ¬	
구분	제출서류	지자체	기관	기업	비고
1	사업계획서		0		양식 1
2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및 청렴서약서	0	0	0	양식 2
3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0	0	0	양식 3
4	참여의사 확약서	0	0	0	양식 4
5	지방비 매칭 확약서	0	_	-	양식 5 (해당 시)
6	현금 및 현물출자(인건비) 확약서 <sup>2)</sup>	0	0	О	양식 6 (규제발굴형 제외)
7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0	0	О	-
8	법인등기부등본	-	0	0	최근 1개월 내 발급
9	최근 2년간('23~'24) 회계감사보고서 (감사의견 포함) 또는 표준재무제표(날인본 표지 포함) <sup>3)</sup>	-	0	0	수익 발생 법인의 경우 (비영리기관 제외)
10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	-	0	0	-
11	<b>참여인력 재직 확인 서류</b> (재직증명서)	0	0	0	-
12	참여인력 재직 확인 서류	Ο	0	Ο	재직증명서 & 4대 사회보험 가입내역 확인서
13	참여인력 근무 확약서	0	0	0	양식 7
14	신규 참여연구원 채용(예정) 확인서 4)	-	-	0	양식 8 (해당 시)
15	로봇 동작을 촬영한 동영상 자료	-	-	0	-
16	<b>가점 및 사후관리 사항 확인서</b> - (규제발굴) 스타트업 적정성 확인서	-	-	-	양식 9 (해당 시)

<sup>1)</sup> 필수 제출 서류 일부라도 누락 시 사전 지원 제외, 잘못된 서류 제출 등이 발견될 경우 심사 제외 / 사본 서류의 경우 원본대조 날인 必(날인의 경우 법인인감 사용이 원칙이나, 사용인감 사용 시 사용인감계 제출)

- 3) '24년 표준재무제표 확정본 제출이 어려운 경우 '22년, '23년 자료로 제출 가능
- 4) 신규 인력 인건비 산정하였을 경우 제출(규제발굴형 한정)
- ※ 위 제출 서류는 사업자 선정에 필요한 최소한의 서류로 선정이 확정된 기업(기관)은 추후 협약 시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음 (보증보험증권, 청렴이행각서, 보안서약서 등 제출)

<sup>2)</sup> 민간부담금 현금·현물 출자에 대한 확약서 제출 필수로 <u>현물 매칭은 인건비만 가능(전체 사업비의 10%)</u>. 인건비 현물 매칭 시, 과제 선정 후 해당 인력 급여명세서 추가 제출 必

## 6. 추진 일정(안)

추 <sup>:</sup>	추진절차		주요내용	비고
사업 공고 및 접수		'25. 2 ~ 3. (30일 간)	· 공고 시행 · 신청서 접수(3/24~3/28, 11시까지)	KIRIA
	<b>t</b>			
	서류심사		· 사업계획서 및 제반서류 접수 · 신청 서류 적합성 및 사전지원제외 확인	
사업 선정	서류 및 발표평가	′25. 4. ~ 5.	· 사업계획서 전문가 심층 검토 · 사업내용, 사업비 심의를 통해 최종 지원대상 선정	평가위원회
	최종평가		· 최종평가 및 사업비 확정	
	4			
_	선정결과 통보 및 협약체결		· 평가 결과 통보 및 협약 체결 안내	KIRIA↔선정기관

\* 추진 일정은 접수 과제 규모 및 현황 등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7. 관련 법령 및 규정

□ '지능형로봇 개발 및 보급 족진법」제9조, 제41조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차 지능형로봇 기본계획('24~'28)」('24.1월, 범부처 합동)
□「첨단로봇 규제혁신 방안」('23.3., 범부처 합동)
□ 규제혁신 로봇 실증사업 안내서 (별첨 참고)
□ 지능형로봇 보급 및 확산사업 관리지침 ('24.5.13.) (별첨 참고)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산업기술혁신사업 기술사업화 평가 관리지침」등 산업기술혁신촉진법 관련 법령 및 관련 지침
□ 과제 협약서 및 공고문

\* 상기 법령 및 규정 등을 준용할 수 없는 경우, 진흥원에서 정하는 별도 지침을 따름

#### 8. 문의처

구분	소속	담당자	내선번호	이메일
		이가영 선임	053-210-9678	ga0@kiria.org
사업 관련	서비스 융합팀	윤지혜 선인	053-210-9677	dwg27@kiria.org
		최윤혁 선임	053-210-9679	jmchoi96@kiria.org
시스템 관련	기획예산팀	조승미 선임	053-210-9917	smcho@kiria.org
(과제 신청 및 접수 시 시스템 오류 등)	호원소프트	시스템 고객센터	070-4047-7287	-

#### 9. 기타 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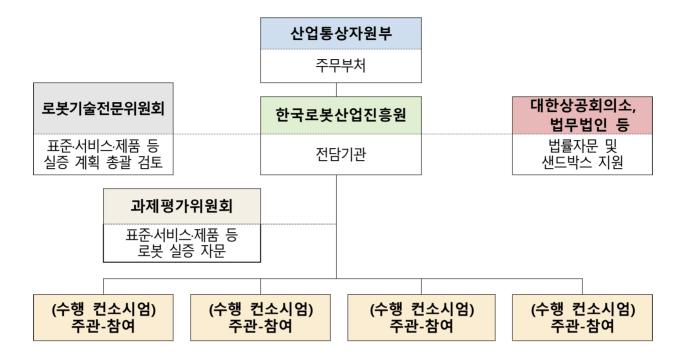
- □ 제출된 서류는 일절(一切) 반환되지 않으며, 평가결과는 (총괄)주관 기관의 책임자에게 공문으로 통보
- □ 선정평가는 공고문에 제시된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하며, 평가 결과와 관련하여 '평가방법 및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 한해 1회 내 이의 제기 가능. 단, 평가 결과에 대해서는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 사업비는 당해 연도 사업운영에 필요한 비용에 대해서만 인정하며, 사업 종료 후 성과활용 기간에 소요되는 비용의 소급편성은 불가
- □ 본 사업은 사업관리시스템(PMS), 사업비관리시스템(RCMS) 필수 적용 대상 사업이며, 사업비 관리를 위해 수행기관에서 지정하는 계좌와 지침 등에 성실하게 임하여야 함

사업관리시스템(PMS)	과제접수부터 협약체결까지의 과정을 본 시스템을 통해 진행
사업비관리시스템(RCMS)	수행기관이 직접 계좌이체, 신용카드 등을 통하여 사업비를 집행, 정산할 수 있는 시스템

- □ 과제에 선정된 컨소시엄은 진흥원이 요청할 경우 대상 사업의 홍보, 전시, 연계 행사 개최 등에 성실하게 임하여야 함
  - 사업수행자는 규제 발굴 및 애로사항 조사 등 관련분야의 법·제도 개선을 위한 주관부처와 진흥원의 노력에 적극 협조해야 함
- □ 사업 수행결과로 취득되는 로봇 등 유·무형적 결과물은 민간부담금 부담 비율에 따라 컨소시엄이 공동 소유하는 것으로 하되, 컨소시엄 가 별도 혐의를 통하여 달리 정할 수 있음
  - 또한 컨소시엄은 소유권 외 상호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에 대하여 상호 협의를 통해 조정할 수 있음
- □ 선정된 사업도 관련 규정의 위반이 발견되거나 사업 추진이 저조한 경우 중간평가 등을 통해 **사업 중단조치**를 내릴 수 있음

## 사업 수행체계(안)

### □ 추진체계



#### < 수행주체별 역할 >

구분	수행 내용	비고
산업통상자원부	·사업총괄, 정책 및 예산 등 총괄 조정	-
한국로봇산업진흥원	・사업기획·평가·관리, 예산 확보 및 편성 ・규제 애로 조사 및 제도 개선방안 도출	전담기관
과제평가위원회	· 과제계획 평가 및 선정기관 선정, 중간점검 및 결과평가 · 과제 범위 및 예산 조정, 사업비 적정성 검토	-
로봇기술전문위원회	・선정과제 기획·로봇 도입 및 표준·서비스 자문, 종합 검토 ・서비스 및 로봇·표준·규제·사업화 등 분야별 전문가 구성	자문기구
대한상공회의소 법무법인	•실증과제 법률 자문, 규제 샌드박스 연계 지원	자문기구
로봇기업, SI기업	・컨소시엄 구성 및 수행계획 수립 ・과제진행 및 현황·결과 보고 등	주관기관
수요기관, 연구기관 등	•컨소시엄 구성 및 수행 계획 참여	참여기관

# 유형별 지원 개요

구분	규제발굴형	제품검증형	데이터확보형			
	자유 공모 (단, 유형별 과업 내용에 적합한 규제 개선의 필요성이 높은 과제 우선 선정)					
주관 기관		공급기업(로봇기업, SI기업 등	)			
참여	수요처, 연구기관 대학 등					
기관 	선택	선택	필수			
지원 기간		2025. 5. ~ 2025. 12.				
지원 규모	과제당 최대 0.6억원	과제당 2.5억원 내외	과제당 2.5억원 내외			
지원 조건	총 사업비 100% 총사업비의 50% 이내 국비 지원 국비 지원 (민간부담금 50% 이상)					
지원 내용	로봇 스펙·표준·규제 자문 등 사전 규제 발굴 및 실증 시나리오 구체화 등이 포함된 "세부 사업 계획 수립" 비용	과제 추진에 필요한 "개조·개량 및 시제품 제작 비용" 및 이를 검증하기 위한 "시험평가 비용" 등	수요처(참여기관) 내 로봇 도입 및 실증에 필요한 "개조·개량 및 인프라 구축 비용" 및 사업 운영 관련 제반 비용 등			
과업 내용	사업 모델에 따른 규제요소 발굴 및 개선 로드맵 수립	규제 해소를 위한 제품 개조·개량 및 검증	규제 해결을 위한 실증 및 관련 데이터 확보			
예시	BM의 규제유무가 불분명하여 사전파악 및 정비 방향 등 규제해결형 사업계획서 설계 필요한 모델	법·제도 등 관련 기준·조건에 적합하지 않아 시장 출시를 위해 제품 개조·개량이 필요한 모델	규제 개선을 위해 실증을 통한 임상, 안전성, 효과성 등 근거 자료 도출이 필요한 모델			

<sup>\*</sup> 총 지원 규모의 경우 정부 예산(안)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평가 절차 및 시기(안)

추진절차		추진시기	주요내용	비고	
사업 공고 및 접수		'25. 2 ~ 3. (30일 간)	· 공고 시행 · 신청서 접수(3/24~3/28)	KIRIA	
	Û				
	서류심사	′25. 4. ~ 5.	· 사업계획서 및 제반서류 접수 · 신청 서류 적합성 및 시전지원제외 확인	평가위원회	
사업 선정	서류 및 발표평가		<ul><li>사업계획서 전문가 심층 검토</li><li>사업내용, 사업비 심의를 통해 최종 지원대상 선정</li><li>필요시 현장평가 진행</li></ul>		
	최종평가		· 최종평가 및 사업비 확정		
	Û				
_	선정결과 통보 및 협약체결		· 평가 결과 통보 및 협약 체결 안내 · 과제 협약 체결 및 선정기관 대상 워크숍 개최	KIRIA↔선정기관	
	Û				
사업	시업 착수 및 사업비 지급	′25. 6.	· 이행보증보험 발급·제출 (컨소시엄 → 진흥원) 및 국비 지급 · 사업 시행 및 모니터링	KIRIA	
추진	중간점검	′25. 9.~10.	· 중간점검(서면, 현장점검) (과제 진행상황, 사업비 집행현황 점검)	평가위원회 및 KIRIA	
<b>1</b>					
최종평가		′25. 12. ~ ′26. 1.	· 유형별 사업 최종평가	평가위원회 및 KIRIA	

<sup>※</sup> 본 사업은 연내 협약 종료가 되는 사업으로, 유형별 주요 과업은 최종평가 전까지 완료 필수 (규제 발굴, 개조·개량, 수요처 맞춤 로봇 도입·실증)

## 유형별 사업비 지원 범위(안)

- □ (사업비 지원 범위) 유형별 상이
  - \* 예시 외, 세부 항목은 '지능형로봇 보급 및 확산사업 관리지침' 참고하여 편성
  - \* 사업비 사용 관련하여 사업계획서에 내용 기재 필수
  - o (규제발굴형) 수행인력 인건비, 실증 시나리오 계획, 규제·안전기준 관련 전문가 자문, 사업계획서 수립 등 직접 경비

비목	세목	구분	내역 및 주의사항	비고
7	내부 인건비	내부인건비	○ 소속기관 급여 기준에 따른 수행기간 동안의 급여 총액 <sup>*</sup> * 4대 보험과 퇴직충당금의 본인 및 기관 부담분 포함 - 월급여 x 참여기간 x 참여율 * 월급여 : 전년도 연말정산기준 급여총액/12 * 신규 채용 인력의 경우 사업계획서에 명시해야 함. 신규 채용이 불가하여 인건비가 남은 경우 타 세목으로 변경 사용 불가	[ <b>선택]</b> 30% 이하
	연구 활동비	전문가 활용비	<ul><li>수행기관 외의 기관에 소속된 전문가에게 집행되는</li><li>자문 및 컨설팅 비용(여비 포함 산정 가능)</li></ul>	[필수]
직		사업화전략 및 컨설팅비	○ 전문가 자문 외 BM설계, 사업화 방안, 규제 완화 방안 등 컨설팅 기관 용역이 필요한 경우 소요 비용 *추후 결과물(보고서) 제출 필수	50% 이상
접 비		세나7點 및 참가비	○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집행되는 행사경비	[ 선택 ]
		서비스 검증비	<ul> <li>시험·분석·검사, 안전점검·검사비, 임상시험, 기술정보수집, 특허 및 표준 정보조사비, 사업화전략 및 엔지니어링 컨설팅 비용 등</li> </ul>	[선택]
		공공요금	○ 우편요금, 택배비 등	[ 선택 ]
		수수료	○ 사업비 정산 수수료, 이행보증보험료 * 정산수수료(주관기관 편성), 이행보증보험(사업비 집행기관별 편성)	[필수]
		안새복사비	○ 사업관련 자료 인쇄, 복사 등	[ 선택 ]
		국내여비 사 <del>무용품</del> 비	○ 참여인력의 국내 여비 및 시내교통비 ○ 사업 관련 사무용품비	[ 선택 ]
		야근 식대	○ 사업 관련 야근 식대	10% 이하
		회의비	○ 사업 관련 회의비	
간접사업비 간접		간접비	○ 기관 공통지원경비 - 로봇 활용을 위한 기관 간접비(현금) 인정 - 비영리법인 한정	[ <b>선택</b> ] 기관별 직접비의 5% 이하

- (제품검증형) 사업 계획에 따른 로봇 개조·개량·시제품 등 제작 비용 및 기타 검증을 위한 인프라 구축 등 제반 비용
  - 전체 사업비 10% 이내 현물 매칭 가능 (인건비 한정)

비목	세목	구분	내역 및 주의사항	비고
	연구시설· 장비 및 재료비 (로봇제작 및 개량)	로봇 제작 경비	○ 로봇 제작을 위한 재료 구입 등 제반 경비 (원가 기준) * 로봇 제작을 위한 원가(HW, SW, 커스터마이징)	
		커스터 마이징비용	○ 제작 로봇의 개조·개량을 위한 재료비, SW구입비 등	[ 필수 ]
		테스트베드 구축 및 운영	○ 테스트베드 구축 및 로봇을 설치하기 위한 시설, 장비 및 재료비, 시스템 구입비 등 * 로봇 설치를 위한 시스템, 부대설비 등 비용 지원	50% 이상
	연구 활동비	서비스 검증비	○ 시험·분석·검사, 안전점검·검사비, 임상시험, 기술 정보수집, 특허 및 표준 정보조사비, 정보DB 및 네트워크 사용료, 사업화전략 및 엔지니어링 컨설팅 비용, 디자인 정보조사・개발 및 컨설팅 비용(디자인 연계가 필요한 경우 한정), 소프트웨어 품질검증비・품질컨설팅비 등	[ 필수 ]
직 접 사		전문가 활용비	<ul> <li>수행기관 외의 기관에 소속된 전문가에게 집행되는</li> <li>자문 및 컨설팅 비용(여비 포함 산정 가능)</li> </ul>	[ 선택 ]
업비		수수료	○ 사업비 위탁정산 수수료, 이행보증보험료(필수) * 정산수수료(주관기관 편성), 이행보증보험(사업비 집행기관별 편성) ○ 생산물배상책임보험(PL) 가입비용(선택)	[필수]
		인쇄복사비	○ 사업관련 자료 인쇄, 복사 등	
		국내여비	○ 참여인력의 국내 여비 및 시내교통비	[선택]
		회의비	○ 사업 관련 회의비	10% 이하
		사무용품비	○ 사업 관련 사무용품비	
	인건비	내부인건비	○ 소속기관 급여 기준에 따른 수행기간 동안의 급여 총액 * 4대 보험과 퇴직충당금의 본인 및 기관 부담분 포함 - 월급여 x 참여기간 x 참여율 * 월급여 : 전년도 연말정산기준 급여총액/12	[ 선택 ] 10% 이하 (현물만 가능)
간접사업비 간접비		간접비	○ 기관 공통지원경비 - 로봇 도입, 활용을 위한 기관 간접비(현금) 인정 - 비영리법인 한정	[ <b>선택</b> ] 기관별 직접비의 5% 이하

- (데이터확보형) 수요처에 대상 로봇을 도입 및 실증 데이터 도출 관련 제반 비용
  - 전체 사업비 10% 이내 현물 매칭 가능 (인건비 한정)

비목	세목	구분	내역 및 주의사항	비고	
	연구시설· 장비 및 재료비 (로봇제작 및 개량)	커스터 마이징비용	○ 제작 로봇의 개조·개량을 위한 재료비, SW구입비 등	[필수]	
			○ 테스트베드 구축 및 로봇을 설치하기 위한 시설, 장비 및 재료비, 시스템 구입비 등 * 로봇 설치를 위한 시스템, 부대설비 등 비용 지원		
		로봇 도입 비용	○ 서비스용로봇 도입 비용  * 사업계획서 제출시 실제 판매가격에 대한 증빙(거래내역서, 실제 판매 세금계산서 등) 필수 제출  * 로봇판매가는 로봇 HW, SW, 커스터마이징 비용 등을 전반적으로 포함하여 실제 소비자에게 공급되는 비용을 말하며, 로봇 특성에 따라 구체적으로 작성(관련 판매 실적이 없는 경우 제시한 판매가를 증빙할 수 있는 내역 또는 제작단가 근거 자료 제시 필수)	50% 이상	
직 접 사 업 비	연구 활동비	서비스 검증비	<ul> <li>시험·분석·검사, 안전점검·검사비, 임상시험, 기술 정보수집, 특허 및 표준 정보조사비, 정보DB 및 네트워크 사용료, 사업화전략 및 엔지니어링 컨설팅 비용, 디자인 정보조사・개발 및 컨설팅 비용(디자인 연계가 필요한 경우 한정), 소프트웨어 품질검증비・품질컨설팅비 등</li> </ul>	[ 선택 ]	
-1		전문가 활용비	<ul><li>수행기관 외의 기관에 소속된 전문가에게 집행되는 자문 및 컨설팅 비용(여비 포함 산정 가능)</li></ul>		
			수수료	○ 사업비 위탁정산 수수료, 이행보증보험료(필수) * 정산수수료(주관기관 편성), 이행보증보험(사업비 집행기관별 편성) ○ 생산물배상책임보험(PL) 가입비용(선택)	[필수]
		국내여비	○ 참여인력의 국내 여비 및 시내교통비	[ 선택 ]	
		회의비	○ 사업 관련 회의비	10% 이하	
	인건비	내부인건비	○ 소속기관 급여 기준에 따른 수행기간 동안의 급여 총액 * 4대 보험과 퇴직충당금의 본인 및 기관 부담분 포함 - 월급여 x 참여기간 x 참여율 * 월급여 : 전년도 연말정산기준 급여총액/12	[ <b>선택</b> ] 10% 이하 (현물만 가능)	
간접사업비 간접비		간접비	○ 기관 공통지원경비 - 로봇 도입, 활용을 위한 기관 간접비(현금) 인정 - 비영리법인 한정	[ <b>선택</b> ] 기관별 직접비의 5% 이하	